#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14

발의연월일: 2025. 1. 24.

발 의 자:김소희·김형동·고동진

김미애 · 엄태영 · 김상훈

성일종 • 주호영 • 김예지

이인선 · 김성원 · 김선교

박덕흠 • 김기웅 • 신동욱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은 무공해차 보급 확대와 사용자 편의 확대를 위한 핵심 요소이나, 최근 일부 충전시설 사업자 등의 관리 미흡으로 인해 무공해차 사용자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음.

환경부는 민원센터 운영, 충전시설 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왔으나, 충전시설에 대한 관리 규정이 부재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 고, 충전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도 부재한 상황 임.

이에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충전시설의 위치, 규모 등의 설치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고,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등 이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고장 시 신속한 수리 등을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적정 관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10부터 제58조의12까지 신설 등).

#### 법률 제 호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10부터 제58조의12까지를 각각 제58조의13부터 제58조의15까지로 하고, 제58조의10부터 제58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10(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전산망 등록 등) ① 저공해자 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려는 자는 충전시설의 위치, 규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정보를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 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충전시설의 이용 상태, 충전요금, 고장 여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용정보를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에 실 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충전시설의 설치 및 이용정보를 소방청 등 관계 기관에 제공하고, 저공해자동차등의 사용자 편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8조의11(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관리기준) ① 저공해자동차등

- 의 충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충전시설 고장 등으로 인해 사용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장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리하는 등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충전시설이 기준에 맞게 운영·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수 있다.
- 제58조의12(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 전담기구의 지정·운영) ① 환경 부장관은 제58조의10 및 제58조의11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 설 설치정보의 전산망 등록, 이용정보의 실시간 제공, 관리기준 준 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8조의15(종전의 제58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종 전의 제58조의12) 제2항 중 "제58조의11제1항"을 각각 "제58조의14제1 항"으로 한다.
- 제94조제1항제1호의5를 제1호의7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5 및 제1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5. 제58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충전시설 설치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충전시설 이용정보를 제공 하지 아니한 자

1의6.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 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58조의10(저공해자동차등 충전
	시설의 전산망 등록 등) ① 저
	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설
	치 또는 운영하려는 자는 충전
	시설의 위치, 규모 등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설치정보를 제58조
	제16항에 따른 전산망에 등록하
	<u>여야 한다.</u>
	②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
	을 운영하려는 자는 사용자 편
	의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충전
	시설의 이용 상태, 충전요금, 고
	장 여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이용정보를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에 실시간으로 제공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충전시설의 설치 및
	이용정보를 소방청 등 관계 기
	관에 제공하고, 저공해자동차등
	의 사용자 편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
	<u>다.</u>

<신 설>

<신 설>

제58조의11(저공해자동차등 충전 시설의 관리기준) ① 저공해자 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운영하려 는 자는 충전시설 고장 등으로 인해 사용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장이 발생한 경우 신 속하게 수리하는 등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 니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충전시설이 기준에 맞게 운영・ 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8조의12(저공해자동차등 충전 시설 전담기구의 지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제58조의10 및 제58조의11에 따른 저공해자동 차등 충전시설 설치정보의 전산 망 등록, 이용정보의 실시간 제 공,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 검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지

<u>제58조의10</u> · <u>제58조의11</u> (생 략)

제58조의12(인·허가 등의 의제)
① 환경부장관이 제58조의11제
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설치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지정·인가·협의 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1. ~ 14. (생략)
- ② 환경부장관은 <u>제58조의11제</u> 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경우 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④ (생 략)
-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u>령령으로 정한다.</u>
제 <u>58조의13</u> ・ <u>제58조의14</u> (현행 제
58조의10 및 제58조의11과 같
<u>ㅇ</u> )
제 <u>58조의15</u> (인·허가 등의 의제)
① <u>제58조의14제1</u>
하
1. ~ 14. (현행과 같음)
② <u>제58조의14제1</u>
<u>항</u>
③・④ (현행과 같음)
제94조(과태료) ①

한다.

1. ~ 1의4. (생 략)

<신 설>

<신 설>

1의5. (생략)

2. · 3. (생략)

② ~ ⑥ (생 략)

---.

1. ~ 1의4. (현행과 같음)

1의5. 제58조의10제1항을 위반 하여 충전시설 설치정보를 등 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충전시설 이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u>자</u>

1의6.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의7. (현행 제1호의5와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